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8일, 김위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위상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

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지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①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②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는 현행 사전 승인 방식을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통보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대체과징금 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고, 지역계획을 적기에 수립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의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타법의 적용례를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사유가 고의 및 중대성이 없는 경우¹⁾에 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 토양보전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 환경부는 제23조의10제2항제2호(오염토양의 반출 정화), 제3호(오염농도 낮추는 행위), 제5호(수탁받은 오염토양의 매립 또는 누출 등), 제8호(다른자에게 등록증 대여 등) 등의 경우에는 고의 및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대체과징금 적용을 배제하고,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며, 대체과징금 부과 관련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제4항, 제4조제4항·제5항 및 안 부칙 제2조).

수정주요내용

가. 대체과징금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대체과징금 적용을 배제함(안 제23조의15제4항).

나.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관련 적용례 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 전단 중 “통보한 후에 시행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23조의15제4항 중 “불구하고 과징금”을 “불구하고 제23조의10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관련 적용례) 제23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u>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u>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u>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시행하여야</u> -----. ----- -----.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 ----- ----- ----- ----- <u>제출하여야</u> -----. ----- -----.
	<신설>	⑤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
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을 받은 자에 대하
여 제23조의10제2
항 및 제3항에 따
라 영업정지를 명
하여야 하는 경우
로서 그 영업정지
가 주민의 생활이
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
음하여 매출액에 1
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

다.

⑥ (개정안 제5항과
같음)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
음)

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
10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
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④ -----불구
하고 제23조의10
제2항제2호·제3호·
제5호 또는 제8호
에 해당하거나 과
징금-----

⑤ (개정안과 같음)

	<u>따라 징수한 과징</u> <u>금은 환경보전사업</u> <u>외의 용도로 사용</u> <u>하여서는 아니 된</u> <u>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월</u> <u>이 경과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u>제2조(과징금 부과</u> <u>관련 적용례) 제23</u> <u>조의15의 개정규</u> <u>정은 이 법 시행</u> <u>이후 영업정지처분</u> <u>의 사유가 발생한</u> <u>경우부터 적용한</u> <u>다.</u>
--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를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절차와”를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로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2에 제23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10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u>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u>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u><신설></u> ⑤ (생략)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 ② (생략) <u><신설></u>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u> -----. -----. ⑤ <u>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u>

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신설>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지정절차, 제3항에 따
른 의견수렴 절차와-----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의
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
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
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
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
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
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10제2항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